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 제2016-3호 :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고시 정정고시 2
 - 제2016-4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7
- 공 고
 - 제2016-11호 :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공람공고 8
 - 제2016-13호 : 세대주명단 작성 비용 공시 10
 - 제2016-14호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11
 - 제2016-15호 : 조례의 제정과 폐기 청구권자 총수 공고 12
 - 제2016-16호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공고 13
 - 제2016-23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일괄개정 입법예고 15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3호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고시 정정고시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2016-1호(2016.1.6.)로 고시된 우리구 을지로2가 88-5 일원 “장교구역 제 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조서의 입체면 적 및 입체적 결정범위 내용에 오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정내용
[정정전]

1)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조서(서울시에 구분지상권 설정)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분							비고 (해수면 기준)
			지적면적 (㎡)	평면면적 (㎡)	입체면적 (㎡)	길이 (m)	폭 (m)	높이(m, 지하)	최초 결정일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2가 정거장 [지하연결통로]	을지로2가 88-5일대	928.1	177.9	1,108.2	43.0	5.0	31.2~16.8 (해수면기준)	‘77.12.1 (건교제)32회	- 엘리베이터 부분 (16.8m~31.2m) - 에스컬레이터, 계단부 부분(19.5m~29.9m) - 연결부 부분 (20.8m~26.6m)
세부 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을지로변 출입시설 일부) - 지상 1층 : A=177.9㎡, H = 31.2m~26.6m(해수면기준) - 지하 1층 : A=177.9㎡, H = 26.6m~16.8m(해수면기준)									

[정정후]

1)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조서(서울시에 구분지상권 설정)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분							비고 (해수면 기준)
			지적면 적 (㎡)	평면면 적 (㎡)	입체면적 (㎡)	길이 (m)	폭 (m)	높이(m, 지 하)	최초 결정일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2가 정거장 [지하연결통로]	을지로2가 88-5일대	928.1	177.9	1,144.5 1	43. 0	5.0	31.3~16.1 (해수면기 준)	‘77.12.1 (건교제)32 회	- 엘리베이터 부분 (16.1m~31.3m) - 에스컬레이터, 계단부 부분(19.6m~29.9m) - 연결부 부분 (20.8m~25.4m)
세부 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을지로변 출입시설 일부) - 지상 1층 : A=177.9㎡, H = 31.3m~27.0m(해수면기준) - 지하 1층 : A=177.9㎡, H = 27.0m~16.1m(해수면기준)									

- 나. 정정사유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조서상 입체면적 및 입체적 결정범위의 내용에 오기사항이 있어 정정함.
 다. 관계서류 :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

연번	소유자	지번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번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축물							비 고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지목	면적	구조	용도	연면적			지목	대지지분	위치	구조	용도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	
17		중구 을지로2가 88-10	대	0.70															
18		중구 을지로2가 88-23	대	3.90															
19		중구 을지로2가 88-12	대	149.10															
20		중구 을지로2가 88-14	대	36.10															
소 계				2,173.20				2,838.47	소 계			1,978.00				16,978.17	13,855.31	30,833.48	
확정에정측량으로 인한 면적정정				2,174.40					서울시	장교동 나번지	도	97.70							
									서울시	중구 장교동 다번지	도	98.70							
									소 계			196.40							
총 계				2,174.40				2,838.47	총 계			2,174.40				16,978.17	13,855.31	30,833.48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서울시 구분지상권 설정]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 분			비 고 (해수면 기준)												
				지적면적 (㎡)	평면면적 (㎡)	입체면적 (㎡)	길이 (m)	폭 (m)	높이 (m, 지하)	최초 결정일									
철도		도시 철도 (2호선) 을지로2가 정거장 [지하연결 통로]	을지로 2가 88-5 일대	928.1	177.9	1,108.20	43.0	5.0	31.2~16.8 (해수면기준)	'77.12.1 (건고 제232호)	- 엘리베이터부분 H=16.8m~31.2m - 에스컬레이터,계단부부분 H=19.5m~29.9m								
세부사항		○ 입체적결정범위(을지로변출입시설일부) - 지상 1층 : A=177.9㎡, H=31.2m~26.6m(해수면기준) - 지하 1층 : A=177.9㎡, H=26.6m~16.8m(해수면기준)										- 연결부부분 H=20.8m~26.6m							

연번	소유자	지번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번	분양예정지 대지 및 건축물							비 고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지목	면적	구조	용도	연면적			지목	대지지분	위치	구조	용도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			
17		중구 을지로2가 88-10	대	0.70																	
18		중구 을지로2가 88-23	대	3.90																	
19		중구 을지로2가 88-12	대	149.10																	
20		중구 을지로2가 88-14	대	36.10																	
소 계				2,173.20				2,838.47	소 계		1,978.00				16,978.17	13,855.31	30,833.48				
확정에정특량으로 인한 면적정정				2,174.40					서울시	장교동 나번지	도	97.70									
									서울시	중구 장교동 다번지	도	98.70									
									소 계		196.40										
총 계				2,174.40				2,838.47	총 계		2,174.40				16,978.17	13,855.31	30,833.48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서울시 구분지상권 설정]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 분							비 고 (해수면 기준)							
							지적면적 (㎡)		평면면적 (㎡)		입체면적 (㎡)		길이 (m)		폭 (m)		높이 (m, 지하)		최초 결정일		
철도			도시 철도 (2호선) 을지로2가 정거장 [지하연결 통로]		을지로 2가 88-5 일대		928.1		177.9		1,144.51		43.0		5.0		31.3~16.1 (해수면기준)		'77.12.1 (건고 제232호)		
세부사항			○ 입체적결정범위(을지로변출입시설일부) - 지상 1층 : A=177.9㎡, H=31.3m~27.0m(해수면기준) - 지하 1층 : A=177.9㎡, H=27.0m~16.1m(해수면기준)																		
			- 엘리베이터부분 H=16.1m~31.3m - 에스컬레이터, 계단부분 H=19.6m~29.9m - 연결부분 H=20.8m~25.4m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48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40-2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48	2010.04.19.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의 호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1~5)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01.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11호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계획」 공람공고

- 1.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구간 내의 주민과 점포주, 건물주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추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 2.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업구간 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은 공람기간 이내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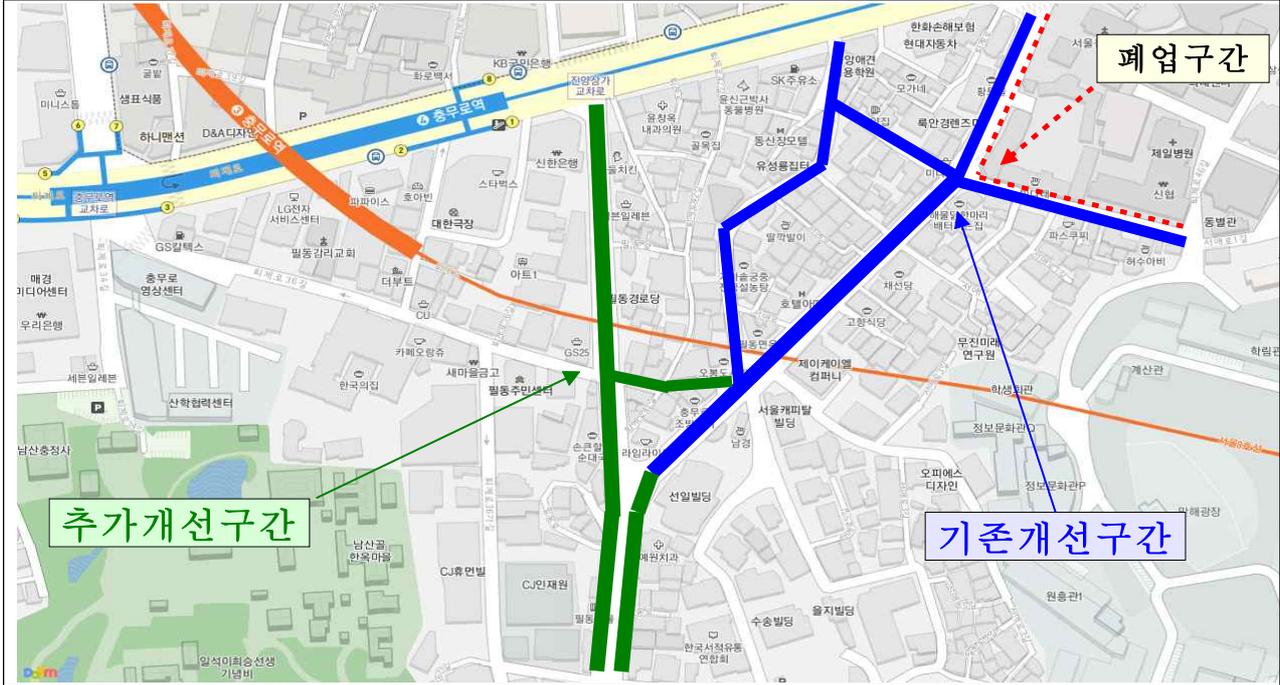
2016. 1.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2016. 1.13 ~ 1.27)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6층 도시디자인과(☎02-3396-5984)
- 다. 주요내용
 - (1) 사업명칭 :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 (2) 변경구간 : 서애 대학문화거리 추가구간내 55개점포(벨라스위트호텔~CJ인재원)
 - ※ 당초 150개 점포중 폐업·이전 등으로 95개 점포 간판개선 추진
 - (3) 사업내용 : 형광등 간판을 LED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 (4) 사업기간 : 2015년 7월 ~ 2016년 2월까지
 - ※ 사업구간이 추가되어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
 - (5) 사업방법 : 간판개선 및 관리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협정 추진
 - (6) 사 업 비 : 375,000천원(구비)
 - 1업소 당 2,500천원 이내 제작설치비용 지원
 - 지원비의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
- 라. 관련문건 : 생략(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비치 문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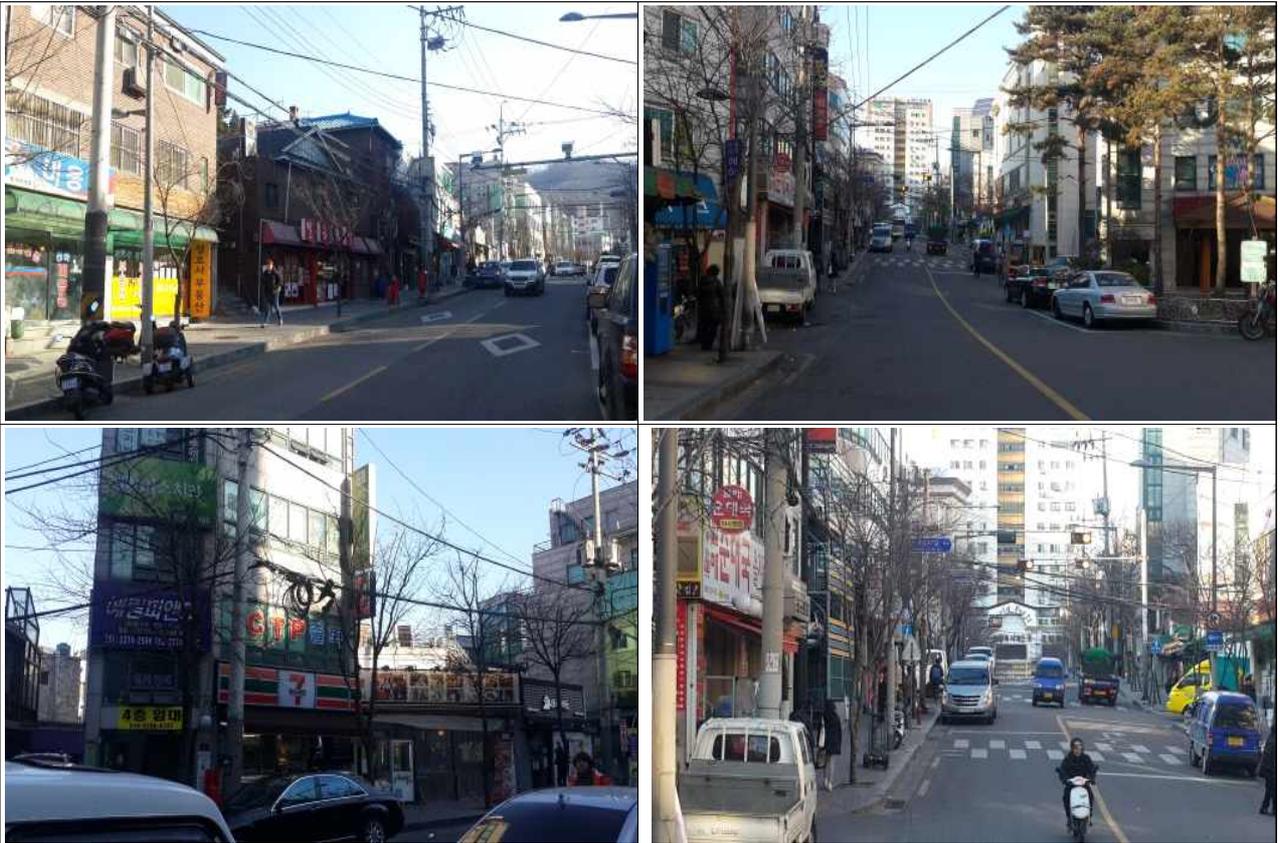
붙임 :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필동 서애 대학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 -13호

세대주명단 작성 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같은 법 제111조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 고
① 일반명단 A4용지 제공 : A4용지1매 기준 66원 ② 라벨용 명단 제공 : 라벨용지1매 기준 201원	전산자료 복사본 CD 제공 : =(500원×디스크 개수)+(30원×면수)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6-14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제5조와 같은 법 제9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총수,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상 19세 이상 재외국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1. 8.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기준일 2015. 12. 31.)

구 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총 수	111,404 명
주 민 수	109,443 명
외국인 수	1,108 명
재외국민 수	853 명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6-15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고

「지방자치법」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주민총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의 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 총수,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상 19세 이상 재외국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1. 8.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기준일 2015. 12. 31.)

구 분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총 수	111,142 명
주 민 수	109,443 명
외국인 수	846 명
재외국민 수	853 명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6-16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중구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경과된 19세 이상 외국인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1. 8.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 중구청장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시 받아야 할 서명인 수
중 구 청 장		110,463	16,577
등 명	소 공 동	1,091	164
	회 현 동	5,300	796
	명 동	2,825	424
	필 동	3,862	580
	장 총 동	4,607	692
	광 희 동	4,626	694
	을 지 로 동	1,650	248
	신 당 동	6,927	1,040
	다 산 동	13,532	2,030
	약 수 동	16,087	2,414
	청 구 동	13,146	1,972
	신당 제5동	8,679	1,302
	동 화 동	9,650	1,448
	황 학 동	10,948	1,643
	중 림 동	7,533	1,130

▣ 중구의회 지역구의원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시 받아야 할 서명인 수
중구 가선거구		24,652	4,931
동명	소 공 동	1,091	219
	명 동	2,825	247
	광 희 동	4,626	247
	을 지 로동	1,650	247
	신 당 동	6,927	247
	중 립 동	7,533	247
중구 나선거구		29,277	5,856
동명	신당 제5동	8,679	293
	동 화 동	9,650	293
	항 학 동	10,948	293
중구 다선거구		27,301	5,461
동명	회 현 동	5,300	274
	필 동	3,862	274
	장 총 동	4,607	274
	다 산 동	13,532	274
중구 라선거구		29,233	5,847
동명	약 수 동	16,087	293
	청 구 동	13,146	293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23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일괄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행2015.7.1.)으로 인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통합급여)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개별급여로 보장별 기준이 세분화되어 대상자 명칭 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외 2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괄개정 대상

연번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1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재무과
2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청소행정과
3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사회복지과

□ 개정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개별급여 대상자 보장기준이 세분화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

□ 정비 방법

- 입법형식(조례)에 따라 해당 서식을 일괄개정 추진
- 정비안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 3396-5353, FAX : 3396-8730, auk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기획예산과
(☎3396-535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며,

제88조의1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삭제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계급여
- 2. 주거급여
- 3. 의료급여
- 4. 교육급여
- 5. 해산급여(解産給與)
- 6. 장제급여(葬祭給與)
-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